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[제출용]

등기번호	730066	
등록번호	110111-7300661	
상 호	주식회사 엘티하나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	.
본 점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5층(역삼동,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)	.

공고방법	회사의 공고는 일간 머니투데이에 게재하되,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경우,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기로 한다.	.
------	---	---

1주의 금액	금 5,000 원	.
--------	-----------	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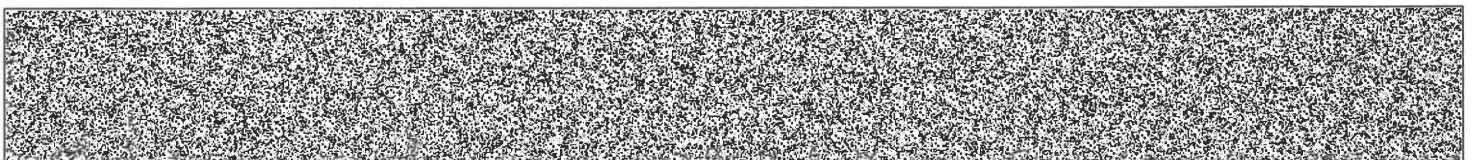
발행할 주식의 총수	100,000,000 주	.
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

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	자본금의 액	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
발행주식의 총수 60,000 주		.
보통주식 60,000 주	금 300,000,000 원	.
발행주식의 총수 3,725,800 주		2020.06.13 변경
보통주식 1,460,000 주		2020.06.16 등기
종류주식 2,265,800 주	금 18,629,000,000 원	

목 적
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(이하 부투법 이라 한다)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·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, 그 자산의 투자·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.
1.부동산의 취득·관리·개량 및 처분
2.부동산의 개발사업
3.주택건설사업
4.부동산의 임대차
5.증권의 매매
6.금융기관에의 예치
7.지상권·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·관리·처분
8.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·관리·처분

임원에 관한 사항
사내이사 박영희 750103-*****
2022 년 11 월 21 일 중임 2022 년 11 월 22 일 등기

[인터넷 발급]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, 인터넷등기소(<http://www.iros.go.kr>)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


발행번호 11803030041010502211102220062610007317K1T1N1Q0U1D1 3

발급확인번호 0668-AAWN-HVPO

발행일:2022/11/25

등기번호	730066
대표이사 박영희 750103-***** 경기도 과천시 [REDACTED]	
2022 년 11 월 21 일 중임	2022 년 11 월 22 일 등기
기타비상무이사 김연희 801218-*****	
2022 년 11 월 21 일 중임	2022 년 11 월 22 일 등기
기타비상무이사 정현섭 801106-*****	
2022 년 11 월 21 일 중임	2022 년 11 월 22 일 등기
감사 김종수 730725-*****	
2022 년 03 월 31 일 중임	2022 년 04 월 04 일 등기

종류주식의 내용

종류주식

①회사는 팔천만(80,000,000)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, 종류주식은 누적적, 참가적이고 의결권이 있다. 본 정관에서 “참가적”이란 본 조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3호에 따라 초과처분이익의 배당 또는 배분에 참가한다는 의미이다.

②회사는 매 결산기에 종류주식 발행가액의 연 3.01%의 비율로(이하 “우선배당률”이라 한다) 해당 결산기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종류주식에 배당하고, 그 후 남은 이익은 보통주식에 배당한다.

③어느 사업연도의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우선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누적된 미배당금액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에 추가하여 배당한다.

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, 회사는 신축한 공동주택 및 그 부속시설(이하 “대상부동산”이라 한다)의 매각일(일부 매각 포함)이 속한 결산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이익을 배당한다.

1.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금액과 제3항에 따른 누적된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그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. 단, 대상부동산의 일부 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본 항 제2호 중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에 대해서만 해당 결산기의 배당금을 계산하여 배당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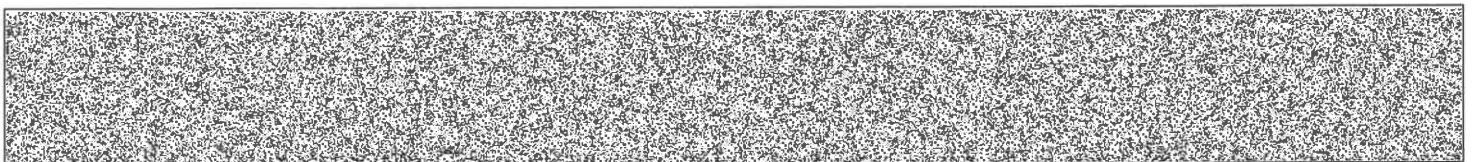
2. 종류주식에 대한 누적배당액(본 항 제1호에 따라 배당된 금액을 포함한다)이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에 출자금 납부일 익일부터 해당 결산기의 말일까지 내부수익률(종류주주가 납부한 주식인수대금의 현재가치가 배당 등으로 회수되는 모든 금액의 현재가치와 동일하게 되는 할인율을 의미함) 연 3.01%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(명확히 하기 위하여,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을 제외한 수익만을 의미함)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 및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(단, 대상부동산의 일부 매각이 포함된 이전 결산기에 본 호에 해당하는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분을 공제함)을 배당한다.

3. 대상부동산의 매각가격이 기준매각가격(아래에 정의됨) 이상 상승한 경우, 대상부동산의 매각가격과 기준매각가격의 차액의 10%에 해당하는 처분이익(이하 “초과처분이익”이라 함)은 종류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.

※ “기준매각가격” = (공동주택의 시세) × (1+r1)n/365 + (근린생활시설의 시세) × (1+r2)n/365

-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시세 : 2019.12.18.자 기금투자심의위원회에서 회사의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완충률을 산정하기 위해 승인한 시세

-r1 : 공동주택의 연간 가격 상승률로 1.3%로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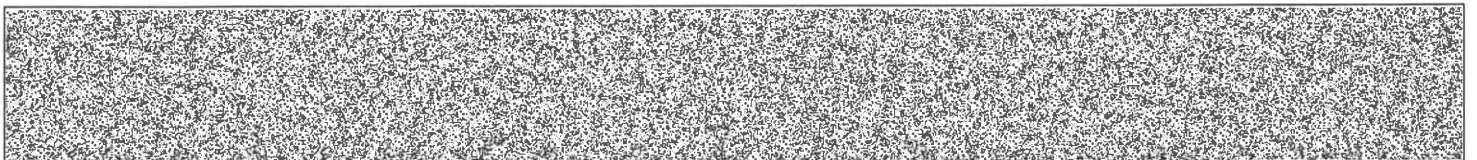
등기번호	730066
------	--------

-r2 :근린생활시설의 연간 가격 상승률로 0.0%로 한다. -n : 종류주주의 최초출자일로부터 대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최초 매매계약 체결 일까지의 총 일수 4.그 후 남은 이익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. ⑤회사 청산시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을 분배한다. 1.본 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배당해야 할 금액 중 미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, 그 미배당된 금액 상당액을 종류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. 2.청산 시까지 종류주식에 배당된 이익배당액 및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 배분액 기타 배분액의 합계가 종류주식의 출자금 납부일 익일부터 잔여재산 분배일까지 내부수익률 연 3.01%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(종류주식의 발행가액을 제외한 수익만을 의미함)과 종류주식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 상당액을 종류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.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제4항 제2호에 의해 기 배당된 금액은 본 호에 의해 이중으로 배분하지 아니하고, 이 부분에 대한 내부수익률은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회수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. 3.종류주식에 대하여 초과처분이익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. 단,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미 배당받은 초과처분이익 부분이 있는 경우, 이는 본 호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대상에서 공제한다. 4.위와 같이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. ⑥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,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 2020 년 06 월 13 일 설정 2020 년 06 월 16 일 등기

기 타 사 항 1. 주식의 양도 회사의 모든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, 이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. 1.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. 1.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 2.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.합병 4.파산 5.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.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7.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8.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
--

회사성립연월일	2019 년 11 월 21 일
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	2019 년 11 월 21 일 등기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

등기번호	730066
------	--------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/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
수수료 1,000원 영수함



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
[다만, 신청이 없는 지점·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]
서기 2022년 11월 25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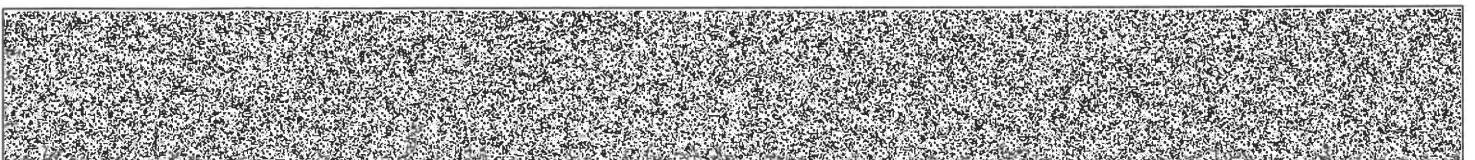
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

전산운영책임관



- 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- 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[인터넷 발급]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, 인터넷등기소(<http://www.iros.go.kr>)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


발행번호 11803030041010502211102220062610007317K1T1N1Q0U1D1 3

발급확인번호 0668-AAWN-HVPO

발행일:2022/11/25